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제19조의 2에 의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기능)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를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추천위원회의 구성) ① 추천위원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.

② 당해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되,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과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 시 구성하며,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

제5조(추천위원회의 조직) ①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<조개정 2015.1.13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임원추천

제6조(개방임원 추천) ①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①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할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 :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
2. 감사 : 단수 추천

③ 개방인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(재직임원은 임기만료 3월 전) 이내에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임원 추천을 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

제7조(회의 소집) ① 위원장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.<조 개정 2015.1.13>

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 작성) 추천위원회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,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은 출석위원 중 3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 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의 공개) 위원장은 본 회의결과를 교내 신문이나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

다.<조개정 2015.1.13>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